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70호 2020. 8. 19.(수)

고 시

- 남해군 고시 제2020-142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1
- 남해군 고시 제2020-143호 도로명 주소 고시 3

공 고

- 남해군 공고 제2020-933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8
- 남해군 공고 제2020-989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포기사항 공고 16
- 남해군 공고 제2020-992호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17
- 남해군 공고 제2020-997호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3
- 남해군 공고 제2020-1029호 분묘개장공고 (2차) 31
- 남해군 공고 제2020-1034호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포기사항 공고 33
- 남해군 공고 제2020-1038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35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4, 행정 3044)

고 시

남해군 고시 제 2020 - 142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7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6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기준점) 고시내역

[남해군]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도근점	13059	중부	144108.81 294739.47	244417.724 294814.258	218.910	128-2-9.5316	34-47-28.2456	2020-07-31	삼동면 봉화리 308-1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도근점	13060	중부	144107.69 294683.01	244416.597 294757.808	216.469	128-2-7.3109	34-47-28.2279	2020-07-31	삼동면 봉화리 1297-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도근점	13061	중부	144087.39 294683.82	244396.304 294758.616	210.806	128-2-7.3345	34-47-27.5692	2020-07-31	삼동면 봉화리 1297-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도근점	13062	중부	143912.54 294288.86	244221.446 294363.651	138.489	128-1-51.7302	34-47-22.0277	2020-07-31	삼동면 봉화리 산356-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도근점	13063	중부	143912.12 294264.63	244221.031 294339.430	135.504	128-1-50.7774	34-47-22.0223	2020-07-31	삼동면 봉화리 산356-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도근점	13064	중부	143893.41 294226.08	244202.319 294300.875	132.254	128-1--507834	34-47-22.0201	2020-07-31	삼동면 봉화리 산356-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남해군 고시 제2020 - 14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0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843-56외 2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사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8.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남 해 군 공 보

2020년 8월 19일

제 670 호 (5)

[부여]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199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843-56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480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49-7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1281-5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415-2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4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471-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49-5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64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208-42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89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220-28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89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220-26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123-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851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56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625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1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287-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668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1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223-34, 산284-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387-1	20090427	수봉황새가 꽃과 같이 있다 하여 큰 마을이라는 큰 새 봉자와 화자를 모아 봉화라 불렀음
1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521, 522-7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 672	20090427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해스포츠파크로 향하는 길임을 반영

남 해 군 공 보

(6) 제 670 호

2020년 8월 19일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7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오동로 80-27	20090427	행정리를 이용. 마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오동나무를 심자 온 마을이 오동나무로 뒤덮인 데에서 유래
14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중현리 338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로 53-23	20090427	행정구역명 이용. 옛 지명인 우물개의 한자표기임
1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부운리 349-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930-46	20090427	고려 충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16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 76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910	2009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1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340-3, 340-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398-1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287-1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344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9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1176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1577번길 39	20100915	남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12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100번 길 37-16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0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68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688번 길 32-18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8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6-16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122번 길 132-11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6-14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122번 길 132-21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01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1202번길 8-3	20090427	흥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146-10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790번길 101	20090427	흥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10-2, 410-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46번길 1	20161209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의한 구간변경

[폐지]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208-35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서대로 208-33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스포츠로 672	20090427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해스포츠파크로 향하는 길임을 반영
4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정포로 53-24	20090427	행정구역명 이용. 옛 지명인 우물개의 한자표기임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 - 933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에 설치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통합기금의 계정, 계정별 재원과 용도 규정(안 제1조~제4조)
- 나.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이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안 제5조~제7조)
- 다. 회계공무원 및 시행규칙, 존속기한 규정(안 제8조~제10조)
- 라.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자금이체, 승계에 관한 부칙 규정
(부칙 안 제1조~제5조)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20년 8월 ○○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2). 연락처 : 전화 055-860-3062,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팀(전화 055- 860-3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 출 자	성 명 (명 칭)			전 화 번 호
	주 소			
자 치 법 규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해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 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예산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승계)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남해군 재정안정화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4조제2항 중 “관리·운용한다”를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세출로”를 “세출로 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③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3조제2항 중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를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① 기금은 군수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운용·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⑥ 「남해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경비로”를 “경비로 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⑦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운용·관리”를 “운용·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으로 한다.

⑧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남해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남해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⑪ 「남해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충당한다”를 “충당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⑫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관리한다”를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 중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⑬ 「남해군 마늘명품화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리·운용한다”를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남해군 공고 2020 - 989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포기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포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양식 제549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창선 냉천	49,500	2020.07.30 2020.08.31	남해군 창선면 냉천	냉천 어촌계	제348호 대체개발

※ '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 양식어업권 포기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양식 제348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창선 냉천	50,000	2010.09.01 2020.08.31	남해군 창선면 냉천	냉천 어촌계	

남해군 공고 2020 - 992호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남 해 군 수

○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체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정치 제147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미조 미조	199,000	2020.08.02 2030.08.01 (10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25	이돈선 외1인 (김미정)	재개발
남해정치 제148호	정치망어업 (소형)	멸치 등	미조 미조	45,000	2020.08.02 2030.08.01 (10년)	남해군 미조면 538번길 41	최인영외 1인 (최경지)	재개발
남해정치 제149호	정치망어업 (중형)	멸치 등	상주 상주	96,000	2020.08.02 2030.08.01 (10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80-6	최엄신	재개발
남해정치 제150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남면 홍현	288,300	2020.08.02 2030.08.01 (10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66	우재순	재개발

※ 2020/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남 해 군 공 보

(18) 제 670 호

2020년 8월 19일

○ 정치망 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채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정치 제73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미조 미조	199,000	2020.08.02 2030.08.01 (10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25	이돈선 외1인 (김미정)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
남해정치 제75호	정치망어업 (소형)	멸치 등	미조 미조	45,000	2020.08.02 2030.08.01 (10년)	남해군 미조면 538번길 41	최인영외 1인 (최경지)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
남해정치 제76호	정치망어업 (중형)	멸치 등	상주 상주	96,000	2020.08.02 2030.08.01 (10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80-6	최엄신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
남해정치 제77호	정치망어업 (대형)	멸치 등	남면 홍현	288,300	2020.08.02 2030.08.01 (10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66	우재순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이 단 선 위 1 (73호)

경남 남해군 정치망어업 면허 제 141 호

축척 : 1/25,000

- 어업의 종류 : 정치망 어업
- 어 잡업 및 방파 벽 : 대형 정치망 어업
-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지선



보조기점 및 특징기점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X=135 202. 9948)
 Y=296 179. 4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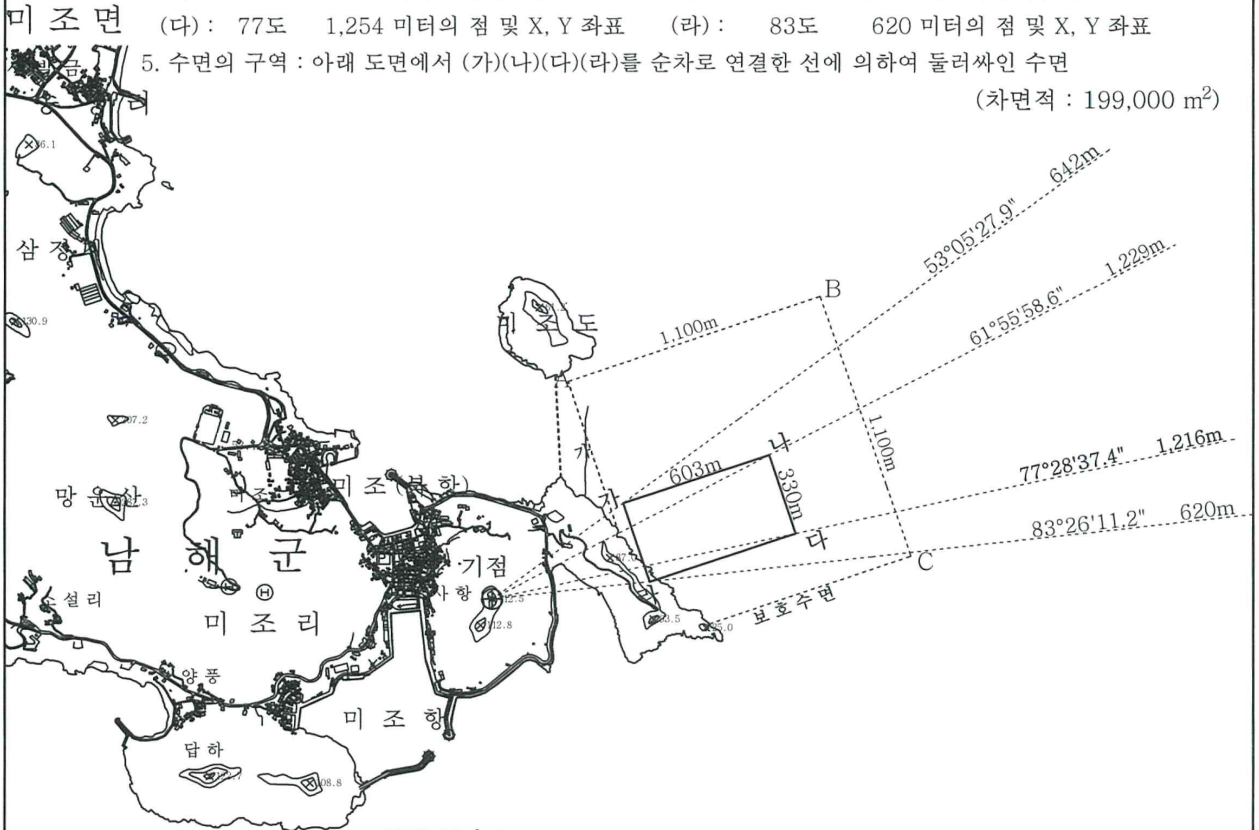
각점 : 기점(삼각점) :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X=135 202. 9948)
 Y=296 179. 4150)

(가) : 53도 642 미터의 점 및 X, Y 좌표 (나) : 61도 1,229 미터의 점 및 X, Y 좌표

(다) : 77도 1,254 미터의 점 및 X, Y 좌표 (라) : 83도 620 미터의 점 및 X, Y 좌표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차면적 : 199,000 m²)



WGS-84 좌표

부호	N (X)	E (Y)
가	34° 42' 51.127"	128° 03' 22.785"
나	34° 42' 57.190"	128° 03' 45.314"
다	34° 42' 46.953"	128° 03' 49.236"
라	34° 42' 40.890"	128° 03' 26.708"

보호수면

A	34° 43' 07.046"	128° 03' 14.549"
B	34° 43' 17.791"	128° 03' 53.309"
C	34° 42' 43.887"	128° 04' 06.792"

부호	거리(M)
가-나	603m
나-다	330m
다-라	603m
라-가	330m

청 우 기 술 (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 정보원 등록업체
 연안조사 측량업 등록(제 01-2012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1길4
 여수연락처:010-4602-3889 FAX:(061)662-8967
 본사. 02)453-7055~56. FAX.02)453-7096
 측량및지형공간정보특급기술인 한상수
 (등록번호 : 60018765)

2020. 07. 22



남해 정치 제 148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정치망
-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정치망
-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 4. 기점 및 각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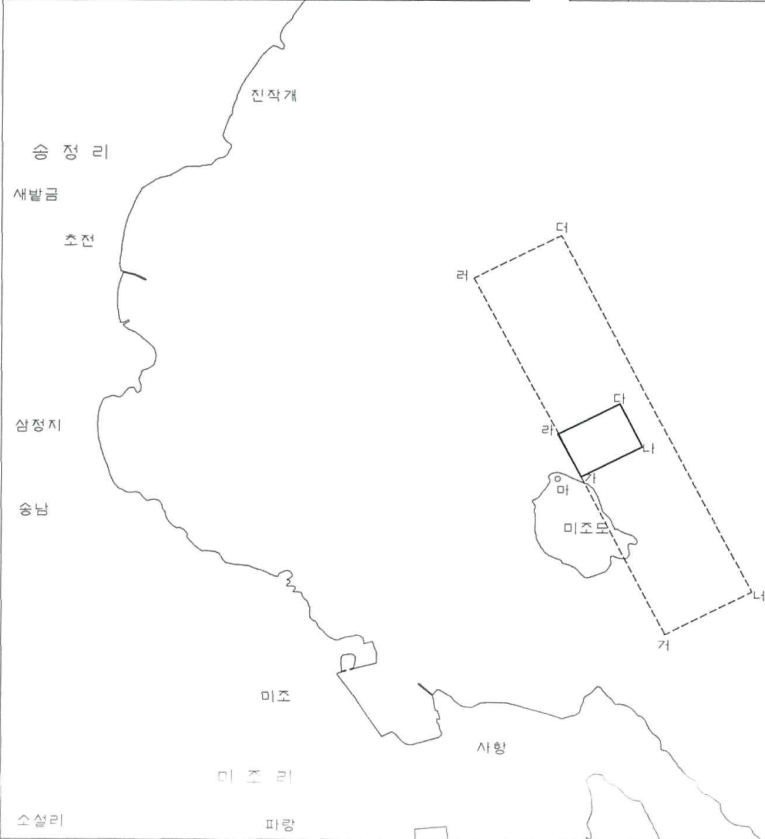
축척 : $\frac{1}{25,000}$

(마) N 34-43-19.164, E 128-03-06.922

-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45,000 m²

보호구역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위 도	경 도	거 리
거	34-43-00.349	128-03-22.421	가	34-43-19.469	128-03-10.247	가나 250
너	34-43-05.645	128-03-34.595	나	34-43-23.232	128-03-18.951	나다 180
더	34-43-48.769	128-03-07.083	다	34-43-28.406	128-03-15.670	다라 250
러	34-43-43.473	128-02-54.840	라	34-43-24.644	128-03-06.966	라가 18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남해 정치 제 149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정치망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정치망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4. 기점 및 각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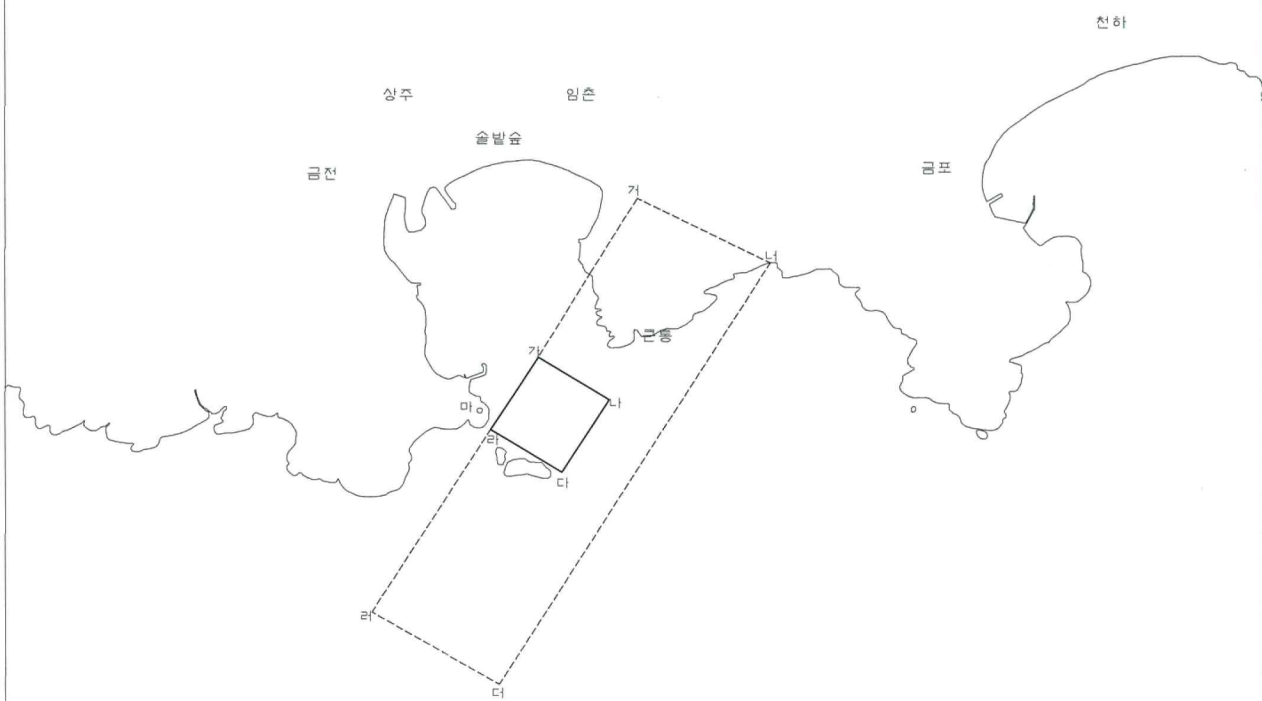
축척 : $\frac{1}{25,000}$

(마) N 34-42-43.072, E 127-59-15.019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96,000 m²

보호구역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위 도	경 도	거 리
거	34-43-09.065	127-59-36.878	가	34-42-49.647	127-59-23.151	가나 300
너	34-43-01.373	127-59-55.659	나	34-42-44.542	127-59-33.189	나다 320
더	34-42-09.746	127-59-18.104	다	34-42-35.701	127-59-26.595	다라 300
러	34-42-18.389	127-59-00.185	라	34-42-40.806	127-59-16.558	라가 32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남해 정치 제 150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정치망
-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정치망
-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현리
- 4. 기점 및 각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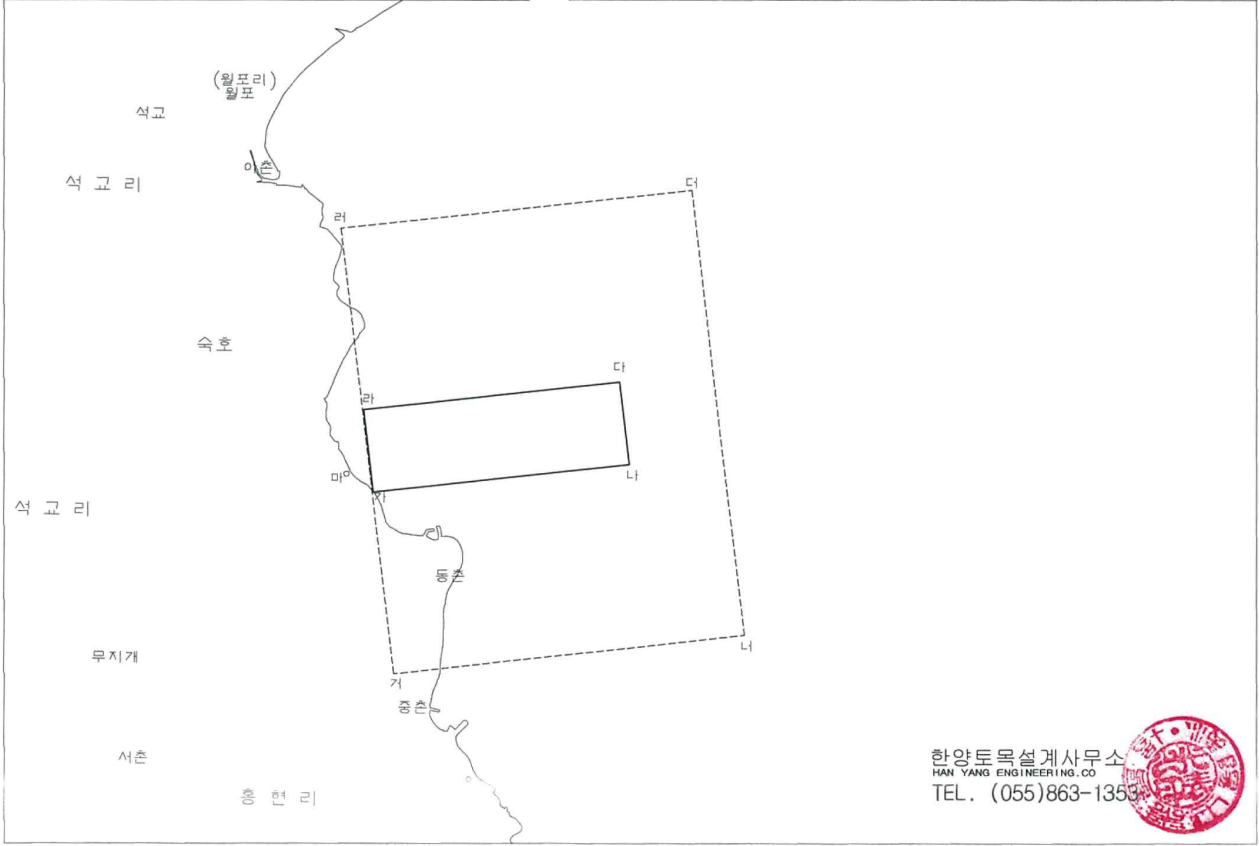
축척 : $\frac{1}{25,000}$

(마) N 34-45-08.247, E 127-54-21.265

-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6. 면 적 : 288,300 m²

보호구역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위 도	경 도	거 리
거	34-44-44.035	127-54-28.312	가	34-45-06.103	127-54-25.130	가나 930
너	34-44-49.202	127-55-18.075	나	34-45-09.788	127-55-01.418	나다 310
더	34-45-43.075	127-55-09.923	다	34-45-19.772	127-54-59.930	다라 930
러	34-45-38.007	127-54-20.149	라	34-45-16.087	127-54-23.641	라가 31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남해군 공고 제2020 - 997호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안 제1조~제6조)
 - 나. 회계공무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 지원신청, 기준가격의 결정 등(안 제7조~제13조)
 - 다.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촉위원의 임기, 위원들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안 제14조~제18조)
 - 라. 회의, 조사·연구, 간사 및 서기, 운영세칙(안 제19조~제22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8월 23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 농축산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906, 팩스 055-860-3981
이메일 lyuoh@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농축산과 농업정책팀(☎ 055-860-39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가격”이란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서 제13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2. “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농산물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최저생산비”란 재료비 등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직접 들어간 비용(보조금으로 지원된 비용은 제외한다)으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에서 조사한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비용을 말한다.
4.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정부가 승인한 남해군 산지유통계획 주관 및 참여조직과의 약정을 통해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지폐기”란 농산물 생산자가 자체적으로 폐기(廢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군의 출연금
- 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4. 그 밖에 수입금

② 기금은 100억 원 이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 적립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1.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기준가격과의 차액(이하 “차액”이라 한다) 지원
- 2. 산지폐기 하는 농산물에 대한 최저생산비 지급
- 3.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 추진
- 4. 농산물 판매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
- 5.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 2. 분임기금운용관 : 농축산과장
- 3. 기금출납원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군 금고(「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 3. 그 밖에 군수가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대상) 기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마늘, 시금치 및 제14조에 따른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품목으로 한다.

제11조(지원기준 및 지원범위) 기금 지원의 세부기준과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액 지원은 제10조의 지원대상 중 상품(上品)을 기준으로 10일 이상 연속하여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차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최저생산비 지원은 신청인 기준 3백만원을 그 지원의 최대로 한다.
3. 상품성이 없는 품목이 무분별하게 출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품목의 경우 지원 금액의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차액과 최저생산비의 연 지원 총액은 해당연도 기금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지원신청) ① 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기금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농업인. 이 경우 하나의 세대에 농업인이 여러 명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명에게만 지원한다.
 - 가.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일 것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직접 생산하여 계통출하 했을 것
 - 다. 차액 지원은 1농가당 농산물 재배면적인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 라. 최저생산비 지원은 1품목당 재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계통출하조직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읍·면장은 그 신청요건 등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기준가격의 결정 등) ① 군수는 기준가격을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서 조사한 생산비, 유통비 등의 통계자료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제14조에 따른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결정한 경우 해당 사항을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해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최저생산비의 결정
2.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 농산물의 결정
3. 기준가격의 결정
4. 기금운용 및 결산
5.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유통지원과장, 농업기술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남해군의회의 의원 1명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남해군지부장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다. 농업관련 및 품목별 단체 대표

라. 농산물 가격관련 농업전문성이 인정되는 전문가 등 군수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가 발생 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상반기 및 하반기 각 1회

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조사·연구)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산물 가격안정 등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1029호

분묘개장공고(2차)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염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편입 토지내 분묘를 개장하고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아래 신고처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공고인 : 경상남도 남해군수

1. 분묘소재지

- 소재지 : 경남 남해군 서면 남상리 1680-2, 1680-23 일원, 1기

2. 개장사유 : 염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3.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무연분묘 안치 : 경남 남해군 남해추모누리 봉안당/봉안 후 10년간 안치

4. 공고기간 : 2차 공고일로부터 60일

5.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이장)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공고인 연락처

- 공고인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수
- 연락처 : 055-860-3291(재난안전과 방재복구팀)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의 관계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리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개장하겠습니다.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거나 누락된 분묘 또는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같음합니다.

남해군 공고 2020 - 1034호

정치망 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포기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정치망 어업 면허 처분 및 어업권 포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남 해 군 수

○ 정치망 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채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정치 제151호	정치망어업 (소형)	멸치 등	창선 진동	41,500	2020.08.12 2026.10.31 (10년)	남해군 창선면 홍선로1505번길 25-2	김희준	제130호 대체 개발

○ 정치망 어업면허 포기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채포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정치 제130호	정치망어업 (소형)	멸치 등	창선 진동	41,500	2020.08.12 2026.10.31 (10년)	남해군 창선면 홍선로1505번길 25-2	김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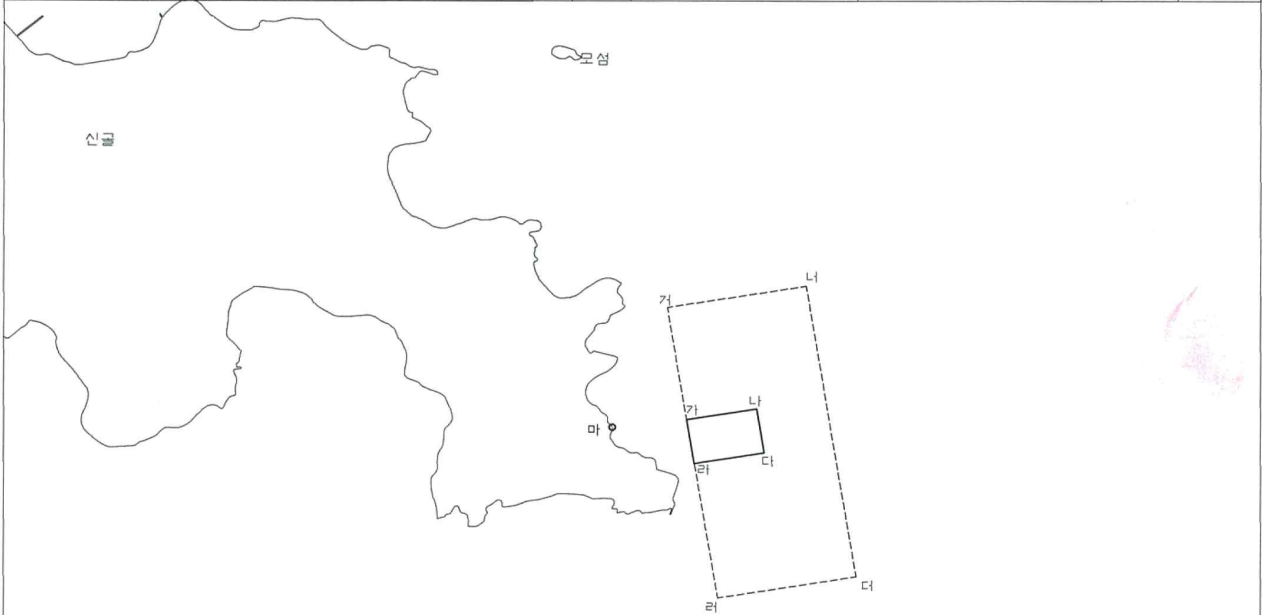
※ 2020/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남해 정치 제 151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정치망
-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정치망
-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 4. 기점 및 각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마): N 34-49-53.18, E128-05-04.62
-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 6. 면 적 : 41,500 m²

축척 : $\frac{1}{25,000}$

보호구역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위 도	경 도	거 리
거	34-50-07.737	128-05-12.286	가	34-49-54.163	128-05-15.154	가나 250
너	34-50-10.475	128-05-31.680	나	34-49-55.555	128-05-24.846	나다 166
더	34-49-35.312	128-05-39.108	다	34-49-50.248	128-05-25.967	다라 250
러	34-49-32.574	128-05-19.715	라	34-49-48.856	128-05-16.275	라가 166



남해군 공고 2020 - 1038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소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3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550호	복합양식 (수하식)	미역류/ 가리비	남면 평산	30,000	2020.08.17. 2030.08.16. (10년)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1길 19	이민지 외 1명	제45호 재개발

※ '20/21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재개발

○ 양식어업권 소멸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m ²)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145호	복합양식 (수하식)	미역류/ 가리비	남면 평산	30,000	2020.08.17. 2030.08.16. (10년)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1길 19	이민지 외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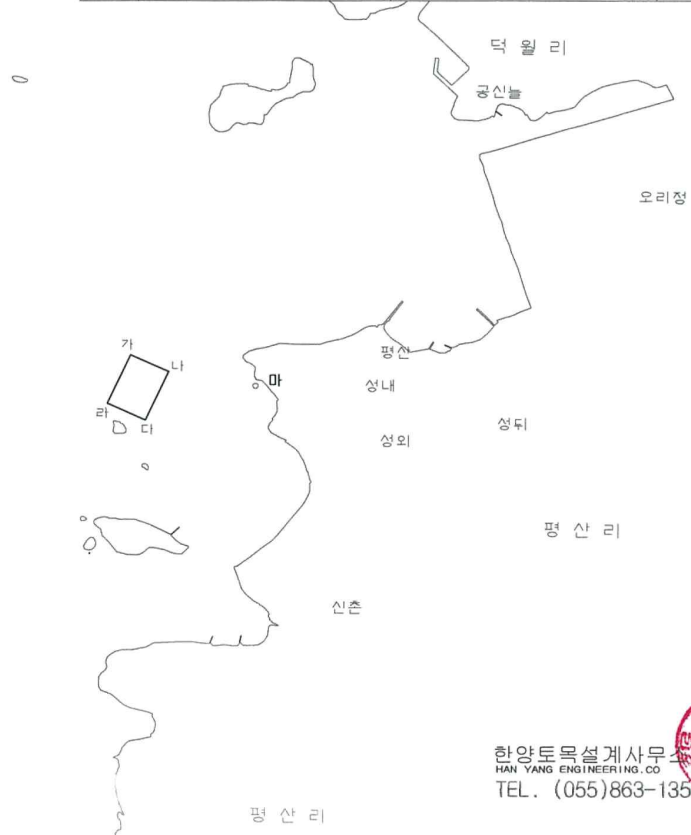
남해양식 제 550 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1. 어업의 종류와 명칭 : 복합양식
- 2. 어구 또는 양식방법 : 수하식
- 3. 수면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산리
- 4. 기점 및 각점 :
 - 기 점
 -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 (마)N34-45-58.28, E127-50-29.80
- 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 6. 면 적 : 30,000 m²

축 척 : $\frac{1}{25,000}$

경 위 도 (WGS)			
	위 도	경 도	거 리
가	34-46-01.912	127-50-12.192	가-나 150
나	34-45-59.933	127-50-17.580	나-다 200
다	34-45-54.004	127-50-14.384	다-라 150
라	34-45-55.982	127-50-08.995	라-가 200



한양토목설계사무소
 HAN YANG ENGINEERING CO.
 TEL. (055)863-1353

